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-51호

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공고(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-00호)」 및 「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(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4-00호)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2월 7일
중 소 기 업 청 장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개정(안)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- 조달청의 물품분류번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자구를 수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지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품 산업군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분할한 지역별로 업체의 입찰참여 범위를 조절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가능토록 하려는 것임

2. 관련근거

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제12조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달청 물품분류번호, 품명 변경 및 신설 내용을 공고, 고시문에 반영
- 나. 중기간 경쟁제품 ‘조형물’에 대한 산업분류번호 추가(석재 23919)
- 다. 중기간 경쟁제품(‘로커’, ‘타일’) 적용범위 명확화를 위한 특이사항 기재
- 라. 총칙의 기타규정 추가(식품 산업군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분할한 지역별로 업체의 입찰참여 범위를 조절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가능토록 함)

4. 입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10일

5. 공고방법 :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에 공고